

## 2003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의안 번호	4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. 17
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사유

- 지방재정법제77조, 동법시행령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으로 취득 및 처분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감천1동 사업대상지(실내체육관 건립부지)로 확정된 부지 및 건물을 구유재산으로 취득 및 취득후 건물을 처분(별실)코자 함.

- 대상재산 현황

(단위: m<sup>2</sup>, 천원)

사업명	구분	소재지	면적 (평)	지목 (구조)	시설개요	소요예산
계			8,715 (2,635)			3,218,588
감천1동실내체육관 건립부지매입	토지	702-1외 1필지	3,552 (1,074)	공장용지, 대	※ 실내체육관 예정부지	2,594,048
	기존 건물	위 지 상	5,163 (1,561)	철골경량조 철근콘크리트	· 지하1,지상4층 건물의 7개동 (사무실, 공장)	624,540

## 3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 
○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
## 공유재산관리계획

### 200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회계명 :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

구 분			합 계	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비고
		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금액 (천 원)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금액 (천 원)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금액 (천 원)	
취 득	계	토지	2	3,552	2,594,048	2	3,552	2,594,048				
		건물	8	5,163	624,540	8	5,163	624,540				
		기타										
	1.매입	토지	2	3,552	2,594,048	2	3,552	2,594,000				
	건물	8	5,163	624,540	8	5,163	624,540					
	기타											
	2.교환 으로 취득	토지										
	건물											
	기타											
	3.기타 취득	토지										
	건물											
	기타											
처 분	계	토지										
		건물	8	5,163	624,540	8	5,163	624,540				
	기타											
	4.매각	토지										
	건물											
기타												
5.양여	토지											
건물												
기타												
6.교환 으로 취득	토지											
건물												
기타												
7.기타 처분	토지											
건물	8	5,163	624,540	8	5,163	624,540						
기타												
사용허가 및 대부	토지											
건물												
기타												